

1. 국가 산업안전보건 규제 체계

1.1 산업안전보건 규제 체계 설명

개요/인용

노동법(2003년 제12호)에는 산업안전보건 및 근무환경의 적절성 확보에 관한 특별절(Book V)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는 장관령에는 더 구체적인 기술적 규정이 있으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규정들은 산업재해, 업무상 상해, 사망 및 질병의 경우에 적용되는 신고 및 절차와 관련되며,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방안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 및 예방 조치를 명시하고, 산업안전보건 업무 및 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정의한다. 여타 법령 및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과 간접적으로 관련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이집트 정부 업무 포털
이집트 환경청
이집트의 산업안전보건 현황

2. 적용 범위 및 예외

2.1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포함한 안전보건

개요/인용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정신 및 심리적 능력에 따라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16조)

2.2 근로자의 정의

개요/인용

근로자는 “사업주의 관리에 따라 임금을 대가로 근로하는 자연인”으로 정의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1조)

2.2.1 특정 분류의 근로자의 범위

2.2.1.1 이주근로자

개요/인용

근로자는 “사업주의 관리에 따라 임금을 대가로 근로하는 자연인”으로 정의된다.

비고/해설

이주근로자를 배제하는 구체적 규정은 없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1조, 제4조)

2.2.1.2 가사근로자

개요/인용

노동법 규정은 “가사근로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한/의무

달리 규정하는 문언이 없는 한 이 규정은 유효하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4조)

2.2.1.3 재택근로자

개요/인용

근로자는 “사업주의 관리에 따라 임금을 대가로 근로하는 자연인”으로 정의된다.

비고/해설

재택근로자를 배제하는 구체적 규정은 없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1조, 제4조)

2.2.1.4 자영업자

2.3 사업주의 정의

개요/인용

사업주는 “임금을 대가로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1조)

2.4 업종별 예외

2.4.1 농업

개요/인용

포함됨. 농업 부문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는 다수의 법률이 있다.

참고자료

해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계적 유해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준, 예방 조치 및 조건에 관한 2003년 명령 제211호.

2003년 살충제에 관한 결의안 제3209호

2004년 농업용 살충제에 관한 결의안 제3059호

1966년 농업법 제53호

2.4.2 건설업

개요/인용

포함됨.

비고/해설

건설 부문을 배제하는 구체적 규정은 없다.

2.4.3 서비스업

개요/인용

포함됨.

비고/해설

서비스 부문을 배제하는 구체적 규정은 없다.

2.4.4 공공 부문

개요/인용

노동법 규정은 “지자체 및 공공 당국을 포함하여 국가 기관의 공무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4조)

2.4.5 기타

개요/인용

노동법 규정은 “사업주가 실제로 부양하는 사업주의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4조)

2.5 산업재해의 정의

2.6 업무상 질병의 정의

2.6.1 업무상 질병 목록

개요/인용

업무상 질병 목록은 법률에 의해 인정된다.

참고자료

1975년 사회보험법 제79호 (표 1)

2.6.2 그 외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상하기 위한 체계

개요/인용

근로자 보험은 “업무상 질병 목록”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자에게만 한정되지 않

고, 더 이상 근로 능력이 없는 자와 여타 유형의 질병의 영향을 받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참고자료

1975년 사회보험법 제79호

3. 산업안전보건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기관 및 프로그램

3.1 산업안전보건 담당 국가기관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감독국이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시행하도록 요구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25조)

3.1.1 목적, 역할 및 기능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감독국”의 구성원들은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시행을 감독하는 감독관들이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25조)

3.1.2 의장 및 구성

3.2 국가 산업안전보건 연구 프로그램 또는 기관

개요/인용

“국립산업안전연구소”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연구를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29조)

3.2.1 목적, 역할 및 기능

개요/인용

“국립산업안전연구소”는 노동부의 관련 기관과 함께 연구 사업의 시행을 지속관리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29조)

3.2.2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3.2.3 자금 조달원

3.3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환경 안전확보 고등자문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한 국가 정책 및 권고 사항 설정을 담당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30조)

3.3.1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에 관한 협의

개요/인용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해당 장관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고, 위원들은 관련 부처의 대표, 각 사업주 단체 및 이집트 노동조합연합회의 대표들 동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근로 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30조)

4.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을 보호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4.1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개요/인용

사업장 및 그 지사들은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며, 물리적 위험성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작업장에서 근로 환경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08조)

4.2 직접 고용 근로자가 아닌 자들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4.3 동일 작업장에서 2인 이상의 사업주 간의 협업

4.4 작업 관련 근로자의 보건 감독

개요/인용

사업장은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의 정기적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국과 공조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19조(c))

4.4.1 감독이 요구되는 특정 유해성

4.5 작업 환경 및 작업 관행의 감독

개요/인용

사업장은 위험성을 발견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각 근무조(특히 위험한 조)에서 작업장에 대한 정기적 일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노동법 제219조(a))

산업안전보건 관련 당국은 오염 물질 및 위험물(예: 농도, 수량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측정 및 평가하고 그 관리를 위한 체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고 근로 환경 안전을 확보하며 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규칙 및 교육을 담당할 사람들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제3조(d)(e)))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19조(a))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4.6 개인보호구 제공 의무

개요/인용

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개인보호구를 제공하고 그 사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16조(b))

4.7 개인보호구 사용 의무

개요/인용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개인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16조(b))

4.8 응급처치 및 복지시설 제공 의무

4.8.1 응급처치의 준비

개요/인용

사업장은 근로자들을 위한 응급처치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처치를 위해 각 근무조에 1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남성 간호사를 고용하거나 동 목적으로 의사가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19조(c))

4.8.2 위생 설비

개요/인용

사업장은 공공시설(위생 설비 및 급수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해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계적 유해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준, 예방 조치 및 조건에 관한 2003년 명령 제211호

4.8.3 식수

개요/인용

사업장은 공공시설(위생 설비 및 급수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해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계적 유해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준, 예방 조치 및 조건에 관한 2003년 명령 제211호

4.8.4 휴게실 및 식당

개요/인용

사업장은 음식 및 음료 보관과 흡연을 위해 작업 구역에서 떨어진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해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계적 유해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준, 예방 조치 및 조건에 관한 2003년 명령 제211호

5.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원칙 및 관행에 따라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

5.1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제반 요소

5.1.1 안전보건의 책임 및 준비사항을 구체화하는 정책 또는 계획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은 작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한 정책 결정을 담당한다.

산업안전보건 기관은 정책의 시행과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관리를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한/의무

이 규정은 본 명령에 첨부된 별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종류 또는 소속을 불문하고 단일 장소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다양한 근로 현장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5.1.2 안전보건 담당자 임명

5.1.3 위험성 평가서

개요/인용

사업장 및 그 자회사들은 유해성, 잠재적 자연 재해 및 산업 재해의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며, 재해 발생 시 사업장 및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해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계적 유해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준, 예방 조치 및 조건에 관한 2003년 명령 제211호

5.1.4 안전한 작업 체계 및 절차

개요/인용

작업장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 기관의 책임이다.

제한/의무

이 규정은 본 명령에 첨부된 별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종류 또는 소속을 불문하고 단일 장소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다양한 근로 현장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5.1.5 위험성 교육훈련 및 안내

개요/인용

종합 교육훈련에 관련하여, 사업장은 근로자 직무 수행의 확고한 토대에 관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은 사업장에서 위험한 화학물질 및 발암성 물질 취급에 관한 교육훈련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그 위험 및 필요한 안전 예방조치를 안내하여야 한다.

위험성 관리는 사업장이 예상되는 자연 재해 및 산업 재해에 관련한 비상 계획에 관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5.1.6 예방조치 결과의 검토 또는 평가

개요/인용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기관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을 작성하고 그 유효성 및 효율성을 시험(긍정적 사항 및 부정적 사항을 파악하고 현장 실험을 실시함으로써)하여야 한다.

제한/의무

이 규정은 본 명령에 첨부된 별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종류 또는 소속을 불문하고 단일 장소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다양한 근로 현장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5.1.7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들과의 협의

개요/인용

근로자들과의 협의는 작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들을 통해 실시하며, 근로자들의 대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한/의무

이 규정은 본 명령에 첨부된 별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종류 또는 소속을 불문하고 단일 장소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다양한 근로 현장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5.2 특정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 또는 기준을 이행할 의무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기관은 정책 실시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리를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한/의무

이 규정은 본 명령에 첨부된 별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종류 또는 소속을 불문하고 단일 장소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다양한 근로 현장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6.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성 및 역량의 가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

6.1 산업안전보건 역량

6.1.1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 자문 및 지원에 대한 요건

6.1.1.1 전문가 또는 전문 서비스의 자격 요건

6.2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임명

개요/인용

사업장 내 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6.2.1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임명이 요구되는 종업원 수

개요/인용

이 규정은 본 명령에 첨부된 별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종류 또는 소속을 불문하고 단일 장소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다양한 근로 현장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7.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

7.1 자신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개요/인용

근로자는 안전 지시 일체를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17조)

7.2 타인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개요/인용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의 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을 방해, 변경 또는 손상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17조)

7.3 타인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감독자의 의무

7.4 타인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상위직급자의 의무

7.5 자신 및 타인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자영업자의 의무

7.6 산업안전보건 관련 요건의 준수 의무

개요/인용

근로자는 안전 지시 일체를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7.7 위험성 및 예방조치에 관해 질문할 권리

7.8 위험 상황에서 피신할 권리

7.9 유해하지 않은 직무로의 전환배치 권리

7.9.1 근로자가 유해하지 않은 직무로 전환배치 되지 않는 경우, 보상을 받고 퇴직할 권리

8.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협업 및 협조

8.1 국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또는 유사 기관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환경 안전확보 고등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여 각 주의 주지사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30조, 제231조)

8.1.1 목적, 역할 및 기능

개요/인용

위원회는 이 분야의 종합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관한 일반 권고 사항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30조)

8.1.2 구성 및 위원장

개요/인용

위원회는 해당 장관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고, 위원들은 관련 부처의 대표, 각 사업주 단체 및 이집트 노동조합연합회의 대표들 동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각 주의 해당 지자체 대표, 각 사업주 단체 및 주 내 근로자들의 대표들 동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30조, 제231조)

8.2 위험성에 관해 근로자와 협의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

개요/인용

근로자들과의 협의는 작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들을 통해 실시하며, 근로자들의 대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한/의무

이 규정은 본 명령에 첨부된 별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종류 또는 소속을 불문하고 단일 장소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다양한 근로 현장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8.3 안전보건 관련 대표자를 선임할 근로자의 권리

개요/인용

근로자들은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 대표들을 파견한다.

제한/의무

이 규정은 본 명령에 첨부된 별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종류 또는 소속을 불문하고 단일 장소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다양한 근로 현장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8.3.1 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기 위한 종업원 수 조건

개요/인용

이 규정은 본 명령에 첨부된 별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종류 또는 소속을 불문하고 단일 장소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다양한 근로 현장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8.3.2 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대표의 적격성 조건

8.4 산업안전보건 대표자의 기능, 권리 및 권한

8.4.1 작업장 검사권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대표들은 사업장의 안전 수준 및 기준 준수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제한/의무

이 규정은 본 명령에 첨부된 별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종류 또는 소속을 불문하고 단일 장소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다양한 근로 현장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8.4.2 산업안전보건 정보 접근권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대표들은 사고 및 부상에 이르는 원인과 근무 여건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들은 산업안전보건 계획과 작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환경 안전확보국”의 업무를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

제한/의무

이 규정은 본 명령에 첨부된 별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종류 또는 소속을 불문하고 단일 장소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다양한 근로 현장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8.4.3 면담 출석권

8.4.4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전문적 지원을 받을 권리

8.4.5 감독관 동행권

8.4.6 시설 사용권

8.4.7 직무수행을 위한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8.4.8 시정통지 교부권

8.4.9 사업주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할 권리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대표들은 사고 및 부상에 이르는 원인과 근무 여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거나 재발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 및 권고안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들은 또한 위험성 예측과 평가에 관한 프로그램 및 계획을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

제한/의무

이 규정은 본 명령에 첨부된 별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종류 또는 소속을 불문하고 단일 장소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다양한 근로 현장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8.4.10 위험한 작업의 중지를 지시할 권리

8.5 사외 근로자 대표가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처리할 권리

8.5.1 작업장 출입권

8.5.2 산업안전보건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을 조사할 권리

8.5.3 근로자들과 협의할 권리

8.5.4 근로자들에게 조언할 권리

8.5.5 강제이행 조치를 개시할 권리

8.6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개요/인용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과 근로 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1개 이상의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한/의무

이 규정은 본 명령에 첨부된 별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종류 또는 소속을 불문하고 단일 장소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다양한 근로 현장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8.6.1 근로자 대표의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참여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한 1개 이상의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지정하는 대리자인 위원장
- 업무 부서장(근로자)인 위원
- 민방위 및 소방 담당관인 위원
- 사업장의 의사인 위원
- 고위 산업안전보건 담당관인 위원

제한/의무

이 규정은 본 명령에 첨부된 별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종류 또는 소속을 불문하고 단일 장소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다양한 근로 현장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8.6.2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설치 조건

개요/인용

이 규정은 본 명령에 첨부된 별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종류 또는 소속을 불문하고 단일 장소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다양한 근로 현장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8.6.3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의 목적, 역할 및 기능

개요/인용

법률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책임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계획의 수립,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시행 보장, 질병 및 사고 예방,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준 준수,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환경 안전확보국” 업무의 추적 관리.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8.6.4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업무 기록

개요/인용

위원회는 근로감독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별 대장에 업무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8.6.5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의사록 공유

개요/인용

위원회는 근로감독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별 대장에 업무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8.7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위원들의 의무 교육

개요/인용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환경 안전확보 위원회의 전문가, 기술자 및 위원들과 의사를 포함한 경영, 생산 및 공공시설 담당자들에게 직급별 책임 사항과 사업장 내 업무 성격에 적합한 방식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동 교육훈련에는 기본, 고급, 특정 및 전문 교육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8.8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개요/인용

“근로자 대표의 권한 행사, 당해 권한의 행사 이력, 근로자들을 대표하고자 하는 행위” 등의 사유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간주할 수 없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120조)

8.9 산업안전보건 관련 권리 및 직무 행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의 면제

9. 특정 유해성 또는 위험성

9.1 생물학적 유해성

개요/인용

사업장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감염 및 여타 생물학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동법 제210조)

사업장 및 그 자회사들은 생물학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환경 안전확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해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계적 유해성을 예방하고 근로환경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 수준, 예방 조치 및 조건에 관한 2003년 명령 제211호 제33조)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10조)

해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계적 유해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준, 예방 조치 및 조건에 관한 2003년 명령 제211호

9.2 화학적 유해성

9.2.1 취급, 보관, 식별 표시 및 사용

개요/인용

사업장 및 그 지사들은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물질 취급으로 인한 화학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노동법 제211조)

사업장 및 그 자회사들은 화학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환경 안전확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해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계적 유해성을 예방하고 근로환경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 수준, 예방 조치 및 조건에 관한 2003년 명령 제211호 제34조)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11조)

해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계적 유해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준, 예방 조치 및 조건에 관한 2003년 명령 제211호

9.2.2 사용자의 안전보건에 관련한 제조자, 공급자 및 수입자의 의무

개요/인용

사업장의 경영진, 사업주, 화학물질 공급자 및 제조자들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 화학물질 안전 보고서를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 식별 정보, 성분, 사양, 수반되는 유해성(독성, 폭발, 화재 등 포함), 잠재적 유해성, 그리고 예견되지 않은 확산 물질의 보호 및 구제 절차와 조치
- 적절한 소방 자재, 소화, 운송 수단, 취급 및 보관, 폐기물 및 잔존물의 안전한 처분 방법, 환경 영향 및 문서 작성일.

참고자료

해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계적 유해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준, 예방 조치 및 조건에 관한 2003년 명령 제211호

9.3 인체공학적 유해성

9.4 물리적 유해성

9.4.1 살충제

참고자료

2003년 살충제에 관한 결의안 제3209호

2004년 농업용 살충제에 관한 결의안 제3059호

1966년 농업법 제53호

9.4.2 이온화 방사선

개요/인용

사업장은 위험한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동법 제208조)

사업장은 원인이 방사성 물질이든 방사선을 생성하는 활동이든 간에 이온화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 조건 및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계적 유해성을 예방하고 근로환경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 수준, 예방 조치 및 조건에 관한 2003년 명령 제211호 제10조)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08조)

해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계적 유해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준, 예방 조치 및 조건에 관한 2003년 명령 제211호

9.4.3 진동 및 소음

개요/인용

사업장은 소음 및 진동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동법 제208조)

소음 수준 증가와 안전 기준을 상회하는 노출 기간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 건강에 위험한 수준의 소음을 저감하는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계적 유해성을 예방하고 근로환경 안전확보

를 위한 안전 수준, 예방 조치 및 조건에 관한 2003년 명령 제211호 제8조)

기계적 진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노출을 예방 또는 저감하는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계적 유해성을 예방하고 근로환경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 수준, 예방 조치 및 조건에 관한 2003년 명령 제211호 제9조)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08조)

해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계적 유해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준, 예방 조치 및 조건에 관한 2003년 명령 제211호

9.4.4 고소작업

개요/인용

비계, 달비계, 코니스, 계단의 사용을 수반하는 작업 또는 지붕 등 높은 장소의 작업 환경에 관한 규정이 있다.

참고자료

해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계적 유해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준, 예방 조치 및 조건에 관한 2003년 명령 제211호

9.4.5 밀폐공간 내의 작업

9.4.6 작업장 시설의 유지보수 미흡으로 인한 위험성

참고자료

해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계적 유해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준, 예방 조치 및 조건에 관한 2003년 명령 제211호

9.4.7 극한 온도에 대한 노출

개요/인용

사업장은 고열/저온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08조)

해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계적 유해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준, 예방 조치 및 조건에 관한 2003년 명령 제211호

9.4.8 화재 위험성

개요/인용

사업장은 폭발 및 화재의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08조, 제214조)

해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계적 유해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준, 예방 조치 및 조건에 관한 2003년 명령 제211호

9.4.9 연초류

개요/인용

사업장을 담당하는 감독자는 사업장에 교부된 면허에 명시된 허용 한도 내를 제외하고, 밀폐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막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타 구역의 공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흡연자들을 위한 특별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대중교통 수단 내 흡연은 금지되어 있다.

참고자료

환경법(1994년 제4호). (제46조)

9.4.10 석면

9.4.11 나노기술 관련 위험성

9.4.12 작업장 내 에이즈 감염

9.5 심리사회적 유해성

9.5.1 심리사회적 위험성

개요/인용

사업장 및 그 지사들은 근로자들의 업무 요건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체적, 정

신적 및 심리적 능력의 관점에서 근로자들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의 건강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16조)

9.5.2 직장 폭력

9.6 기타 유해물질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고 근로 환경을 확보하며 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규칙 및 교육을 담당할 사람들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9.7 기계류

9.7.1 기계류 및 공구 관련 위험성

개요/인용

사업장은 작업 공구 및 기계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동법 제209조)

기계적 유해성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다.

(해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계적 유해성을 예방하고 근로환경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 수준, 예방 조치 및 조건에 관한 2003년 명령 제211호 제14조~제32조)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09조)

해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계적 유해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준, 예방 조치 및 조건에 관한 2003년 명령 제211호

9.7.2 기계류 조작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한 기계류 설계자 및 제조사의 의무

9.7.3 기계류 설계자, 제조자, 수입자 또는 공급자의 정보 제공 의무

9.7.4 승인/인증된 공급자로부터 또는 승인/인증된 경우에만 기계류를 구입해야 하는 의무

9.7.5 기계류 및 장비 유지보수

개요/인용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기관은 기계 사용 및 유지보수에 있어 품질 사양, 표준, 기술 기준은 물론 그 효과성과 작업 성격에 대한 적합성에 따라 기계류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제한/의무

이 규정은 본 명령에 첨부된 별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종류 또는 소속을 불문하고 단일 장소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다양한 근로 현장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2003년 명령 제134호

9.7.5.1 적용 장비 목록

9.8 특정 취약 근로자의 보호 규정

9.8.1 직장에서의 임신부 보호

개요/인용

임신부는 벤젠 또는 벤젠을 함유하는 물질에 노출되는 구역 내 근무가 금지된다. 또한, 여성 근무가 금지되는 장소 내 근무도 금지되어 있다.

참고자료

여성을 고용할 수 없는 작업을 규정한 인력이민부장관령(2003년 제155호) (제1조)

9.8.2 직장에서의 수유 여성 보호

개요/인용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 근로자는 벤젠 또는 벤젠을 함유하는 물질에 노출되는 구역 내 근무가 금지된다. 또한, 여성 근무가 금지되는 장소 내 근무도 금지되어 있다.

참고자료

여성을 고용할 수 없는 작업을 규정한 인력이민부장관령(2003년 제155호) (제1조)

9.8.3 특정 작업, 과업 또는 교대근무에 대한 여성의 접근 제한

개요/인용

법률은 여성 고용이 금지된 업무 유형 30가지를 규정한다.

참고자료

여성을 고용할 수 없는 작업을 규정한 인력이민부장관령(2003년 제155호)

9.8.4 특정 작업, 과업 및 교대근무에 대한 연령에 따른 제한

개요/인용

법률은 18세 미만 및 16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 직업 및 산업 유형을 규정한다.

참고자료

청소년 고용 체계, 고용 조건 및 청소년이 고용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인력이민부장관령(2003년 제155호)

10. 사고/준사고 및 질병의 기록, 신고 및 조사

10.1 업무상 사고, 아차사고 및 업무상 질병의 원인을 기록 및 조사할 의무

10.1.1 업무상 사고

개요/인용

사업장은 질병 및 부상에 관한 반기별 통계 내역을 7월과 1월의 전반기 중에 해당 인력 감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한/의무

근로자 15인 이상의 산업적 사업장 및 근로자 50인 이상의 비산업적 사업장에 적용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28조)

근로자 의료 규정에 관한 2003년 명령 제180호 (제8조).

10.1.2 아차사고

10.1.3 업무상 질병

개요/인용

사업장은 질병 및 부상에 관한 반기별 통계 내역을 7월과 1월의 전반기 중에 해당 인력 감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28조)

근로자 의료 규정에 관한 2003년 명령 제180호 (제8조).

10.2 산업안전보건 당국에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

개요/인용

사업장은 질병 및 부상에 관한 반기별 통계 내역을 7월과 1월의 전반기 중에 해당 인력 감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 후 24시간 내에 해당 인력 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28조)

11.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감독 및 시행

11.1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임명

개요/인용

작업장 검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시행을 통제하는 전문 검사 기관을 설치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24조)

11.2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권한

11.2.1 작업장 출입권

개요/인용

공무원들은 법령 규정의 적용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작업장에 진입하여 검사할 권리가 있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33조)

11.2.2 검사, 시험 및 문의할 권한

개요/인용

감독관들은 근로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근로자들에 대해 필요한 검진 및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근로자들이 사용 및 취급한 물질의 표본을 추출하며, 기구, 카메라 및 기타 장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25조)

11.2.3 조사 권한

11.2.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조언할 의무

11.3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시행 권한

11.3.1 명령 또는 통지의 교부 권한

11.3.2 금전적 벌칙을 부과할 권한

11.3.3 면허 또는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권한

개요/인용

감독관들은 유해 물질을 사용하기 위한 필수 통지 또는 면허를 규정할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해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계적 유해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준, 예방 조치 및 조건에 관한 2003년 명령 제211호

11.3.4 위험한 작업의 중지를 요구할 권한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환경감독국”의 보고에 기초하여, 감독관들은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 폐쇄를 명하거나 하나 이상의 기계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폐업 및 중지 명령은 행정 채널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25조)

11.3.5 기소 개시 권한

11.3.6 기소 수행 권한

11.3.7 기타 집행 권한

개요/인용

감독관들은 사업장의 비상 계획을 검토하고 위험성을 분석하며, 중대 사고의 유형 및 원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이 발표한 행정 보고서의 결과를 검토할 권리가 있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25조 (d), (e))

11.4 법원의 제재 조치

11.4.1 법인에 대한 금전적 벌칙

개요/인용

최소 : 1,000 파운드(USD 148.9)

최대 : 10,000 파운드 (USD 1489.4)

제한/의무

이 규정은 노동법의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환경 안전확보” 절 내의 어떤 조항이든 위반의 경우에 적용된다. 이 벌칙은 사망 또는 부상을 야기하는 범죄의 경우 강행 규정이다. 재발의 경우 벌금은 배액이 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56조)

11.4.2 자연인에 대한 금전적 벌칙

개요/인용

최소 : 1,000 파운드(USD 148.9)

최대 : 10,000 파운드 (USD 1489.4)

제한/의무

이 규정은 노동법의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환경 안전확보” 절 내의 어떤 조항이든 위반의 경우에 적용된다. 이 벌칙은 사망 또는 부상을 야기하는 범죄의 경우 강행 규정이다. 재발의 경우 벌금은 배액이 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56조)

11.4.3 비금전적 제재

11.4.4 형사상 책임

개요/인용

형사적 책임은 법률에 의해 예측 가능하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56조)

11.4.5 자연인에 대한 징역 기간

개요/인용

노동법 제202조~제231조의 위반에 대해 최소 3개월, 최대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제한/의무

이 규정은 노동법의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환경 안전확보” 절 내의 어떤 조항이든 위반의 경우에 적용된다. 이 벌칙은 사망 또는 부상을 야기하는 범죄의 경우 강행 규정이다. 재발의 경우 벌금은 배액이 된다.

참고자료

노동법(2003년 제12호). (제256조)